

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9-122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. 9.

발 의 자 : 김종선 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1회 용품의 성격이 있거나 홍보효과가 미약한 홍보물품을 삭제하고자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제6조 제2항 중 “칫솔, 부채, 자”를 삭제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6조 제2항 중 “칫솔, 부채, 자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u><신 설></u>	제6조(교육·홍보) ① (생략)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홍보를 위하여 <u>장바구니, 다회용</u> <u>컵, 냄비받침, 찻술, 부채, 자, 달</u> <u>력,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</u> 홍보 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.	제6조(교육·홍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장바구니, 다회용</u> <u>컵, 냄비받침, 달력, 컴퓨터용 마</u> <u>우스패드 등</u> ----- -----.